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50
----------	--------

제안일자 : 2019. 08. 29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조례안대로 문화시설을 생활기반시설의 범위에 추가하되,
시설의 나열 순서를 조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문화시설을 생활기반시설의 범위에 추가하여, 시설의 나열 순서를 조정함(안 제2조제2호)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호 중 “생활체육시설, 공원, 주차장, 문화시설”을 “생활체육시설, 문화시설, 공원, 주차장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생활밀착형 사회 기반시설"(이하 "생 활기반시설"이라 한 다)이란 일상생활에 서 시민의 편익을 증 진시키는 도서관, 보 육시설, 노인여가복 지시설, 청소년·아 동복지시설, <u>생활체 육시설, 공원, 주차 장</u> 등으로서 제4조 에 따른 생활기반시 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 다.</p> <p>3.·4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생활체 육시설, 공원, 주차 장, 문화시설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·4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생활체 육시설, 문화시설, 공 원, 주차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생활체육시설, 공원, 주차장”을 “생활체육시설, 문화시설, 공원, 주차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"(이하 "생활기반시설"이라 한다)이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서관, 보육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, 청소년·아동복지시설, <u>생활체육시설</u>, <u>공원</u>, <u>주차장</u> 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3.·4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생활체육시설</u>, <u>문화시설</u>, <u>공원</u>, <u>주차장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